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투자비의 범위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과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투자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토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 등 투자비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투자비·임차료·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정함(안 제3조)

○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기간 및 지원한도를 정함(안 제5조)

○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기간 및 지원한도를 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 작성·관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개 정 규 칙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5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11. 20. ~ 12. 1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2.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규칙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비의 범위)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사업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
2. 시설투자비: 사업에 직접 필요한 건축물, 기계·장비 및 시설의 취득·설치 등에 드는 비용

제3조(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투자협약에 따른 토지의 취득, 건축물의 건축 및 기계·장비·시설의 설치 등 투자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보조금의 지원 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료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1년의 임차기간이 끝

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 말일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투자·임차·고용 또는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요건의 충족 여부와 투자·임차·고용 또는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보조금은 실제 임차료 지급 실적을 확인하여 1년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 또는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후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유지 기간, 고용 유지 등 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투자협약에 정할 수 있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상시고용한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3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기업당 1억원으로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중 고용 후 교육훈련기관에서 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인원이 있는 기업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교육훈련비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기업당 1억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 및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940-9723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조 우 현
	투자유치팀장	이 건 석
	담 당 자	김 강 민

[별지 제1호서식]

보 조 금 지 원 신 청 서

기업명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팩스		**이메일**			
본사 소재지					
지원대상 유형	☐ 외국인투자기업 ☐ 벤처기업 ☐ 첨단업종 기업 ☐ 국내복귀기업 ☐ 투자유치사업구역 입주기업 ☐ 기타 ( )				
입지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자유형	☐ 이전 ☐ 신설 ☐ 증설				
투자시설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그 밖의 시설 ( )				

사업장 현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			
투자 후			

업종 현황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서비스**
기존			
투자 후			

투자금액	**금액(천원)**	**비고**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장비 및 시설비		
합계		

고용 현황	**현재 상시고용인원**	**신규 고용인원**	**파주시민 신규 고용인원**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
	명	명	명	명

교육훈련 현황	**교육훈련기관**	**교육내용**	**교육인원**	**교육기간**	**교육훈련비**
			명	. . . ~ . . .	원

보조금 신청	**신청구분**	**신청금액**	**비고**
	☐ 투자비 보조금	원	
	☐ 임차료 보조금	원	
	☐ 고용보조금	원	
	☐ 교육훈련보조금	원	
	합계	원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보조금 수령계좌 사본 1부
투자 보조금	1.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해당 시) 2.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3. 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4. 토지・건축물・기계・장비 및 시설의 취득・설치에 관한 계약서 1부 5.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투자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료 보조금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 3. 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4. 지역 채용자 명단 1부(해당 시) 5. 지역 채용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해당 시)
고용보조금	1. 지역 채용자 명단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지역 채용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교육훈련보조금	1.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1부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기간 및 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교육훈련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5. 지역 채용자 명단 1부 6.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7. 지역 채용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번호	
안 건 명	
심의요지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직 위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의견)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번호	
안 건 명	
심의요지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직 위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의견)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매입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파주시 관할구역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2.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

으로 정하는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업 추진 상황, 지원금의 사용 여부 및 지원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투자협약에서 정한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투자유치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준용) 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규칙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4.05 규칙 제491호
(일부개정) 2013.05.14 규칙 제4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자문단 회의 운영) ①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자문단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회의결과는 지체 없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분야별 회의는 자문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경비지원) ① 자문료는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활동경비는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4)

1. 사업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사업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장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협의회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두되, 파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협의사항)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된 사항을 통보한다.

1. 투자사업 지역 내 관련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역 내 현안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비밀준수 의무) 자문단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4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table>
<tr><th colspan="5">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th></tr>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경기파주063</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경기도 파주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기업지원과</td></tr>
<tr><td>담당자명</td><td>김강민</td><td>전화번호</td><td>031-940-5291</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11월 16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td><td colspan="4">- 규칙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td></tr>
<tr><td>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④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table>
<tr><th>구분</th><th>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th>개선안
(법령 수정안)</th><th>검토사유</th></tr>
<tr><td>1</td><td><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정보</td><td><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정보 : 성별 수집</td><td>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td></tr>
</table></td></tr>
</table>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6년 11월 24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업지원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63			
정 책 명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김강민	전화번호	031-940-972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지 제1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4]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해당 내용 / 개선안 / 검토사유 < 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정보 / < 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 정보 : 성별 수집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개선의견 수용 : 개선의견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정(성별란 추가)

2026년 11월 18일

기업지원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64		
자치법규명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수진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강민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1.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	팀장 이건석 담당자 김강민
3. 관련법령 등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5조, 제11조~제13조 및 제29조	
4. 주요골자	○ 토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 등 투자비의 범위(안 제2조) ○ 투자비·임차료·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안 제3조) ○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기간 및 지원한도(안 제5조) ○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기간 및 지원한도(안 제6조) ○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 작성·관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투자유치 위원회의 운영과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투자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